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718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17.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정이유

이상기온, 지구 온난화 등 위·해충 서식지 다양화에 따라 감염매개체로부터 고성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재 수준보다 높은 방역 소독 운영체계 필요로 주민참여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통한 적극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다. 자율방역단의 임무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자율방역단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자율방역단의 예산지원, 금지행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47조, 제51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6조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40443(2023. 10. 23.)]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 12호
 - 가) 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읍면별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음.
 - 구성 등(안 제2조), 운영 등(안 제3조)
 - 고성읍 15개 단 이내, 면 1개 단으로 하고, 단 별 10명 이내로 구성
 - 군수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 파악하여 수립한 방역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방역단이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결과를 읍면장에 제출하는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임무(안 제4조), 해임(안 제5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방역물품과 장비 관리, 공중보건 동향 파악 등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여 활동하도록 함.
 - 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역단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전교육(안 제 6조)

- 자율방역단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예산지원(안 제7조)

- 자율방역단 예산 지원 내용과 지원 근거를 적절히 명시함.
- 예산지원 범위: 활동 보상금, 상해보험가입비, 필요 장비 및 소독약품

- 금지행위(안 제8조), 지도·감독(안 제9조)

- 자율방역단이 목적대로 활동하도록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율방역단을 활동 관할 읍·면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고 공공방역과 민간자율방역 병행 실시로 더 촘촘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자율방역 활동 보상금이 공공방역 인건비 수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주민 이해가 필요해 보이며, 읍면 여건상 주민 자율 참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율방역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하향식 주민참여에 따른 자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23. 11. 28. 원안가결